~~34-171~~
김-155

분류기호 문서번호	조 약25171-	(전화번호 :)		대 통 령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 5. 3. 1.	외무부장관	국 무 총 리	
수 신 처 보존기간				
시행일자	1994.5.			
관 련 기 관 협 조 여 부				
협조기관				

김영삼
5.26

수 신	내부 결재	발 신		통 제	
제 목	"한.우즈베키스탄 항공협정" 체결 및 공포				

1994년 5월 23일 제2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표제협정의 체결 및 공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.

1. 외무부장관 또는 주우즈베키스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표제 협정에 서명함.

2. 표제협정의 국내발효를 위하여 "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" 제11조에 의거 공포함.

첨부 : 협정안(국무회의안건) 및 공포안 각 1부. 끝.

1205-27(2-1)일(3)
85. 9. 9 승인

190mm×268mm 인쇄용지특급 70g/㎡
가 40-41 1987. 4. 28.

25

1

45

議案番號	第 250 號
議決年月日	1994. 5. 23. (第 22 回)

議決事項

"大韓民國 政府와 우즈베키스탄共和國 政府간의 各自의 領域間 및 그 以遠의 航空業務에 관한 協定" 締結

提出者	國務委員 韓昇洲 (外務部長官)
提出年月日	1994. . .

法制處審査畢

1. 議決主文

政府는 "大韓民國 政府와 우즈베키스탄共和國 政府간의 各自의 領域간 및 그 以遠의 航空業務에 관한 協定"을 別紙와 같이 締結하기로 함. (國會 同意 필요없음)

2. 提案理由

韓 · 우즈베키스탄간 航空協定을 締結함으로써 우리 民間航空의 우즈베키스탄 進出의 法的基礎를 마련하여 兩國간 人的, 物的 交流擴大와 友好關係의 增進에 寄與하고자 함.

3. 主要骨子 (前文, 本文 20個條 및 附屬書로 구성)

가. 兩國의 指定航空社는 他方國 領域을 無着陸으로 飛行할 權利, 非運輸目的으로 着陸할 權利 및 合意된 路線에서 旅客, 貨物 및 郵便物을 積載, 下陸할 權利를 享有함. (第 2 條)

나. 兩國 政府는 航空機 正規裝備, 部品, 燃料 및 潤滑油 등에 대하여 相互 免稅함. (第 5 條)

다. 兩國의 指定航空社는 他方國內 支社設置 및 營業收益의 本國 送金 權利를 가짐. (第 7 條, 第 12 條)

라. 兩國은 民間航空의 安全을 위해 相互 協力함. (第 16 條)

마. 路線構造는 韓國內 일지점, 우즈베키스탄내 일지점을 각각 出發地點과 目的地點으로 하고, 中間地點과 以遠地點은 추후 指定하기로 함. (附屬書)

4. 主要 討議課題 : 없 음.

5. 參考事項

가. 立法 및 豫算措置 : 別途措置 필요없음.

나. 關係部處 合議 : 財務部 및 交通部와 合議하였음.

다. 交涉經緯

○ 92. 4. 우즈베키스탄側, 協定締結 제의 및 草案 제시

○ 94. 3. 우리側, 修正案 제시

○ 94. 5. 實務交涉會談 (서울)시 文案合意 및 假署名